

문서번호	주민생활지원과-8054	주무관	희망복지지원1팀장	주민생활지원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3.15.	서복수	이만희	심원택	강대형	하철승	03/15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代소병산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**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
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**

2016.3.15.

강 북 구
(주민생활지원과)

서울특별시 강북구

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, 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34조
- 「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 2
- 「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」 [기획예산과-15440(2015.10.22)]

II 개정 내용

- ‘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’ 는 추상적 조항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주민불편 최소화(안 제4조제2항)
-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및 삭제함(안 제5조,9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외)

III 추진 일정

- 2016. 03월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
- 2016. 04월 강북구조례규칙심의회 상정
- 2016. 06월 개정시행규칙 공포 후 시행

V**참고사항**

- 관계법령
 -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34조
 - 「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
 - 「민법」 제750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입법예고 (2016. 03. ~ 2016. 03.)
 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 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붙 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